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안 번호	96-36
----------	-------

제출년월일 : '96. 10.

제 출 자 : 달 서 구 청 장
(경영관리실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3. 주요골자

- 재정운영상황은 매년2회(상·하반기)각각 주민에게 공개함(안 제2조)
-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 대상 규정(안 제3조)
-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구 공보에 게재(안 제4조)
- 구청장의 결위, 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공개 하여야 함.(안 제6조)

4. 조례안 : 별 첨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구청장은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달서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등) ① 재정운영상황은 구 공보에 게재 또는 주민이 알기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외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